

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1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
발 의 자 : 이병도, 강동길, 김기대, 김달호, 김인제, 김재형, 김평남, 김혜련, 노승재, 문장길, 박기재, 박상구, 송아량, 양민규, 이상훈, 이승미, 이정인, 이준형, 최 선, 최정순 의원(20명)

1. 주문

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농안법”)과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·설치되었으나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.
- 또한, 전국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에도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겨가고 있음.
-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유통환경에 대응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함.

-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권은 해당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 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,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이양함.
-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농안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고, 자치분권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할 것을 촉구함.

2. 제안이유

-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 제정되고 설립된 농안법령과 공영도매시장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,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수산물 가격과 생산자인 농어민이 받는 가격간 괴리가 견잡을 수 없이 커졌음.
- 그 원인은 농안법령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개정이 지연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있음.
- 이에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시장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반영하고, 생산자와 소비자, 유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현실여건과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 농안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

4. 이송처

○ 국회의장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

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-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핵심은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, 공정성 확보에 있다.
- 하지만,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농안법”)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영도매시장은 본래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,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수산물 가격과 생산자인 농어민이 받는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.
- 실제로 출하자는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하고 받을 갈아엎는데, 정작 시장이나 마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다.
- 그 원인은 농안법 관련 규정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개정이 지연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.
- 최근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에도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높은 당기순이익과 배당 실적을 기록했다.
- 이러한 비정상은 공정하다고 믿었던 경매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몇 개의

도매시장법인들이 가락시장에서 수십년간 거래를 독점하면서 경쟁이 사라지고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.

○ 결국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가락시장의 판매가격이 전국 시장의 기준 가격이 되고 있으나, 농수산물 거래제도 다변화를 통한 유통 단계를 감소시켜 생산자나 출하자, 소비자에게 최종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.

○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해 공영도매시장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, 농어민과 중소상인, 소비자가 보호받는 거래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농안법령을 정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.

- 첫째, 가락시장의 유통과정 축소를 통한 도매시장 내 유통비용 절감과 가격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도매시장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조성해 농어민과 중소상인,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.

- 둘째, 관행적으로 재지정 해온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,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평가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- 셋째,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농안법령은 개설자의 자치권을 제약하고,

자치분권 확대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.

2021. . 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